포스트코로나와 가짜뉴스

'가짜뉴스'의 개념

- 형식 : 기사나 보도 형식 / 가짜정보 일반
- 내용 : 허위 (의도된 허위/ 인용된 허위/ 결과적 오보)
- 주체 : 언론관계법상 언론 / 무제한
- 유형 : 명예훼손형/ 사회혼란형/ 선거운동형 / 재산편취형

입법발의안에서의 가짜뉴스 개념

▶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

▶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

▶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만드는 형식 (또는 사실검 증 없는 언론보도)

현행법상 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법적 규제

- ◆ 형사처벌
- 형법/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(이하 '정보통신망법'상 명예훼손 및 모욕
- 공직선거법상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공표죄
- ▶ 형법상 신용훼손, 업무방해, 위계 등 공무집행방해
- ▶ 자본시장법상 부당거래행위
- 전기통신기본법상 자기 또는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의 공연 한 허위 통신 행위

현행법상 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법적 규제

- ◆ 행정규제
- ▶ 방통통신위원회의 정보처리 거부 등 명령(정보통신망법)
- 언론중재위원회의 시정권고
- 선고방송심의위원회 및 선거기사심의위원회 등의 결정에 따른 각 제재조치
-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조치

현행법상 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법적 규제

◆ 기타 사법적 규제

- ▶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임시조치 등
- ▶ 반론보도청구, 정정보도청구
- ➤ 손해배상

- ◆ 정보통신망법 개정안
- ▶ 배포하는 자료 참조
- ▶ 가짜뉴스(허위조작정보)의 정의 검토
- ▶ 유포자 처벌,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삭제의무 및 미삭제시 제재
- ▶ 댓글 관리, 상시 모니터링 등 인터넷환경 조성 의무 규정

◆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안

- ▶ 배포하는 자료 참조
- 주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문체부 장관의 시정명령권및 그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무 부과
- 방송법상 피해예방사업 및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조항 신설

◆ 공직선거법 개정안

- ▶ 배포하는 자료 참조
- ➢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시 디지털 증거 확보 방안에 대한 절차 규정 마련
- ➢ 정보통신망에서의 가짜뉴스 유포 금지 및 가짜뉴스 표시 의무제

◆ 공직선거법 개정안

- ▶ 배포하는 자료 참조
- ➢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시 디지털 증거 확보 방안에 대한 절차 규정 마련
- ➢ 정보통신망에서의 가짜뉴스 유포 금지 및 가짜뉴스 표시 의무제

◆ 구 전기통신기본법 위헌 결정 [헌재 2008헌바157, 2009헌바88(병합) 결정]

"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"를 형사처벌함 (전기통신기본법 47조 제1항)

- 공익을 해할 목적과 허위의 통신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음(명확성원칙 및 죄형법정주의 원칙 위반)
- 표현의 자유 제한 원칙에 비추어 볼 때, 일반적인 내용 규제는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, 허위사실공표 그 자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국제적으로 도 드묾
- ▶ 표현의 자유 특성상 과도한 제한은 위축효과를 부르고, 표현 내용에 대한 가치 유무 및 해악성 유무가 국가에 의하여 1차적으로 재단되어선 안됨(과잉금지원칙 위반)

- ▶ 표현의 자유 제한 원칙에 대한 검토
- 명확성 원칙 및 현존 위험의 원칙
- 위축효과 고려
- 표현의 적절성 여부 판단권의 주체 민주주의 원칙의 고려
-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

- ▶ 표현의 자유 제한 원칙에 대한 검토
- 명확성 원칙 및 현존 위험의 원칙
- 위축효과 고려
- 표현의 적절성 여부 판단권의 주체 민주주의 원칙의 고려 (내용규제의 위험성, 사전검열 절대금지 원칙)
- 사상의 자유시장 이론

- ▶ 달라진 미디어 환경에 대한 고려
- 레거시 미디어 위주의 환경
- 인터넷 미디어 환경
- SNS 기반 미디어 환경
- -> 확증편향의 정도가 심해지고, 정보 교환이 원활하지 않음(공 론장의 형해화).
- -> 소수자 보호, 차별금지, 사회안전보장 등에 대한 정부의 역할 요청이 커짐

- ▶ 코로나19 대응기간 퍼진 보도(유사보도 포함) 형태 검토
- 중국인, 특정 종교,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성 보도
- 방역대책에 대한 허위 정보 인용 보도 (검사키트 신뢰성, 마스크 공급 대책, 코로나19의 발병 원인 및 심각성, 코 로나19 대비 민간요법 등)
- 보도 형식이 아닌 가짜정보 : 허위신고, 허위 확진자 정보 유포 등

- ▶ 코로나19 대응기간 퍼진 보도(유사보도 포함) 형태 검토
- 중국인, 특정 종교,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성 보도
- 방역대책에 대한 허위 정보 인용 보도 (검사키트 신뢰성, 마스크 공급 대책, 코로나19의 발병 원인 및 심각성, 코 로나19 대비 민간요법 등)
- -> 두 형태에 대한 법적 규제 공백

- ▶ 차별금지법 제정에 따른 표현 규제
- 독일 사례 (인종차별 등 특정 요소 차별에 기반한 국제범 죄에 대한 옹호 처벌 -> 정보통신망상의 처벌로 확장됨)
- 미국 사례 (법적 처벌은 없으나, 민권법에 기반한 각종 행정적 규제 및 자율적 규제 운용 ex) 페이스북 주가 하 락 사례)
-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 당시 정부와 질본 중심의 혐 오표현 차단 시도가 있었음, 법적 규제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(처벌 뿐만 아니라 행적적 규제 근거도 없음)

- ▶ 가짜뉴스 규제법에 의한 규제(발의입법 검토)
- 명확성 원칙의 문제: '허위조작정보' 내지 '가짜뉴스'의 개 념이 명확한가.

"경제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허위 또는 왜곡된 내용을 보도하거나 보도로 오인될 수 있는 형식으로 작성한 정 보" 또는 "저널리즘의 본령인 사실검증이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증된 것처럼 작성된 정보"

- ▶ 가짜뉴스 규제법에 의한 규제(발의입법 검토)
- 과잉금지 원칙의 문제: 구체적 법익 침해 발생 외에 일반 적 허위정보에 대한 내용규제가 필요한가.
- ✓ 형사처벌의 관점
- ✓ 행정규제의 관점(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의무 부과의 관점)
- ✓ 행정지도의 관점
- ✓ 자율규제의 관점

- ▶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구체적 유형별 대안 제시
- 기존 처벌법만으로도 표현의 자유 제한 과잉 측면이 큼
- 소수자 보호 및 차별금지 관점에서의 법적 규제 도입 필요성 있음 (다만, 형사처벌은 신중해야)
- 일반적 내용 규제의 경우 공공기관의 설명 의무가 경시되고 정치적 반대의견에 대한 탄압으로 악용될 위험이 큼
- 내용규제보다는 확증편향적 알고리듬 차단, 공론장 형성, 효과적인 공공설명 전달 방식 확보 등 건강한 미디어환경 조성에 관한 법적 대책 마련 필요

감사합니다.